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8호 2020. 2. 17.(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

공 고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3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 2020-5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7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7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70	2020.02.17.	건물 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46	2020.02.17.	건물 멸실
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66	2020.02.17.	건물 멸실
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50	2020.02.17.	건물 멸실
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50-1	2020.02.17.	건물 멸실
6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52	2020.02.17.	건물 멸실
7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97번길 19	2020.02.17.	건물 멸실
8	전라남도 목포시 안태길32번길 19-1	2020.02.17.	건물 멸실
9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51번길 9-3	2020.02.17.	건물 멸실

목포시 고시 제 2020-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7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326-1	2020.02.18.	건물 멸실

목포시 공고 제2020 - 237호

입 법 예 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체 비상임 단원의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 급여 인상 : 총 2,892천원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합창단 단무장, 연극단 단원: 3% 인상
 - 인상액 : 984천원(소년소녀합창단 492, 합창단 300, 연극단 단원 192)
 - 소년소녀합창단 안무/ 반주/ 트레이너 : 10% 인상
 - 인상액 : 1,908천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5 개정)

3. 규칙 개정안 : 별도 첨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6. 관련부서의견

- 부패 영향 평가 검토 :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 없음

7. 예산상황 : 2,892천원 인상

8. 입법예고 : 2019. 2. 17(월) ~ 3. 9.(월) /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없음

10.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문화예술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7),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061-270-8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광문화체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0. 4. 1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기획문화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관광문화체육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 5〕〈개정〉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교 향 악 단	지 휘 자	1,108,700	
	부지휘자	923,300	
	악 장	817,700	
	단 무 장	817,700	
	수석연주	738,700	
	정 단 원	738,700	
	준 단 원	633,100	
	연구단원	533,000	
합 창 단	지 휘 자	1,055,200	
	단 무 장	869,500	
	반 주 자	554,000	
	단 원	533,000	
무 용 단	안 무 자	1,055,200	
	훈 련 장	844,200	
	단 원	533,000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1,427,500	
	단 무 장	844,200	
	반 주 자	586,300	
	안 무 자	586,300	
연 극 단	연 출 자	1,655,000	
	단 무 장	844,200	
	단 원	549,000	

[별표 5]

〈신·구조문 대비표〉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교 향 악 단	지 휘 자	1,108,700		교 향 악 단	지 휘 자	1,108,700	
	부지휘자	923,300			부지휘자	923,300	
	악 장	817,700			악 장	817,700	
	단 무 장	817,700			단 무 장	817,700	
	수석연주	738,700			수석연주	738,700	
	정 단 원	738,700			정 단 원	738,700	
	준 단 원	633,100			준 단 원	633,100	
	연구단원	533,000			연구단원	533,000	
합 창 단	지 휘 자	1,055,200		합 창 단	지 휘 자	1,055,200	
	단 무 장	844,200			단 무 장	869,500	
	반 주 자	554,000			반 주 자	554,000	
	단 원	533,000			단 원	533,000	
무 용 단	안 무 자	1,055,200		무 용 단	안 무 자	1,055,200	
	훈 련 장	844,200			훈 련 장	844,200	
	단 원	533,000			단 원	533,000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1,385,900		소년 소녀 합창 단	지 휘 자	1,427,500	
	단 무 장	844,200			단 무 장	844,200	
	반 주 자	533,000			반 주 자	586,300	
	안 무 자	533,000			안 무 자	586,300	
연 극 단	연 출 자	1,655,000		연 극 단	연 출 자	1,655,000	
	단 무 장	844,200			단 무 장	844,200	
					단 원	549,000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20 - 244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목 포 시 장

1. 제정 이유

-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미비하고, 한중 정치관계에 의해 교류 여건이 좌우되어 우리시 국제교류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는 등 중국 편중 교류의 문제점 발생
- 국가 외교정책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외교정책추진 흐름에 따라 중국에 편중된 교류관계를 탈피, 국제교류협력 다변화가 필요함
- 국제교류 확대 추진 시 기존 조례는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하며 특히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의 변화(중화권교류→국제교류)가 요구되므로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가 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명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나. 목적,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책무…………… (안 제1조 ~ 제5조)
 -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정의를 규정

-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및 기본 목표 마련

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명시…………… (안 제6조)

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 (안 제7조 ~ 제8조)

마. 국제교류 재난·재해 구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7조)

- 사전검토, 사전교류, 시의회 의결, 사후 관리, 협정의 파기 등 규정

사.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8조)

-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해촉, 회의 개최, 수당 등 필요사항 규정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제정조례안 : 붙임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없음

- 여성가족과-6415(2020.2.14.) : 2020A전남목포012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0. 2. 17 ~ 3. 9. (21일간)

9.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용당동), 목포시청(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2),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061-270-8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목포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3.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민간단체 및 목포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5.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6.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0조(협정체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도시로부터의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2.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2조(사전교류)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

하여 사전교류 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의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7조(협정의 파기)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국제화 추진협의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의 장, 분야별 실무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
2.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목포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비공개 한다.

제24조(간사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관계에 있는 도시들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